

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6년 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
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대구 지역 내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3월
(재)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

1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요

입주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콘텐츠 IP 개발 및 사업화,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콘텐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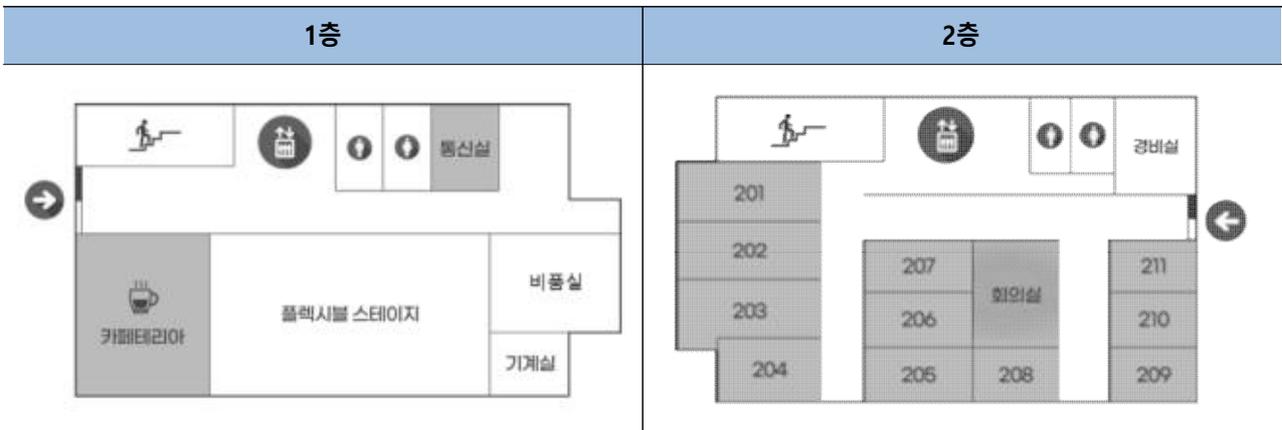
- (위치) 대구시 동구 장등로 76(신천동 84-1)
- (대지) 1,095㎡(331평), (연면적) 2,427㎡(734평)
- (구성) 입주공간 23개실 및 회의실, 휴게실, 세미나실 등



□ 센터 시설현황

구분	시설현황	
	내부	외부
5층	센터 운영사무실	
4층	입주실(6실), 소회의실(1실), 휴게실(2실)	-
3층	입주실(7실), 회의실(1실), 휴게실(1실), 다용도실(1실)	
2층	입주실(10실), 회의실(2실), 관리실(1실)	주차(16면), 장애인주차(1면)
1층	플렉시블스테이지(30명 수용), 카페테리아	-

□ 층별 구성





※ 위 평면도는 입주 희망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

2 모집개요

- 공고명: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6년 1차 입주기업 모집
- 입주기간: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2년, 연장 2년까지 가능(총 4년)
※ 205~211호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1년, 연장 1년까지 가능(총 2년)
- 모집규모: 총 4개실

구분	호실	전용면적		계약면적		월 임·관리비(원) ※ 부가세 포함	최대입주 가능기간
		m ²	평	m ²	평		
2층	210	16.00	4.84	28.44	8.60	60,000	2년
3층	301	28.56	8.64	50.77	15.36	230,360	4년
	303	31.07	9.40	55.23	16.71	250,605	
4층	403	31.07	9.40	55.23	16.71	250,605	

※ 기업별 입주가능 호실 최대 2개(입주 이후 공실 발생 시 추가 호실 신청 가능)

모집대상

- 공고일 기준 **설립 7년 이내 문화콘텐츠 기업**(법인 및 개인)

※ **문화콘텐츠 기업**: 만화(웹툰)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음악, 방송(미디어), 광고, 지식정보, 콘텐츠솔루션, 융복합콘텐츠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, 자체 콘텐츠 제작·개발·IP보유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
 ※ **제외장르**: 영화, 출판, 게임, 디자인, 공연, 문화예술, 공예, 문화재 등

-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**본사 소재지**를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

신청 제외대상(신청일 기준)

- 해외기업(합자회사일 경우,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)
-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(기업 또는 대표자), 신용불량자(대표자)

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·폐업중인 사업자
-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- 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
-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, 임대료 미납 기업
- 센터 기 입주기업 중 2개 입주실 사용기업
 - ※ 기존 입주실 변경 신청 시 담당자 문의 통해 별도 양식 작성하여 제출 및 평가 진행
-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
 - ※ 입주 후,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함이 판명되는 기업은 즉시 입주를 취소하고 퇴거 조치함

3 지원내용

□ 입주공간

- 임·관리비: 계약면적(약 3.3㎡)당 15,000원(계약면적=전용면적+공용면적)
- 공과금: 전기, 상하수도 요금 호실별 실비 부과
- 보증금: 월 임·관리비(부가세 포함)의 12개월분
 - ※ 보증보험이행(지급)증권으로 같음

□ 상세 지원내용

구분	내용
입주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중, 24시간 이용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○ 사무용 가구(책상, 의자 등), 냉난방 설비
인프라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의실: 2~4층 층별 회의공간 운영 및 무상 대관 ○ 플렉시블스튜디오: 콘텐츠 관련 행사 시 지원되는 다목적홀 무상 대관 ○ 편의시설: 카페테리아(전자레인지, 냉장고, 정수기 등), 다용도실, 휴게실 등 ○ 기타: 컬러복합기 무상 이용
관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비, 미화 등 시설 안전 관리
지원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사업)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관련 지원 ○ (네트워킹) 입주기업 오픈톡, 간담회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연도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 안내 예정

4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: 공고일 ~ **2026. 3. 27.(금) 14시까지**
- 신청방법: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(www.dip.or.kr) 알림마당 참고
 - ※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글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&작성 →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- 접수방법: 신청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(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인정하지 않음)
- 접수처: 콘텐츠성장팀 사업담당자(shine@dip.or.kr/053-215-490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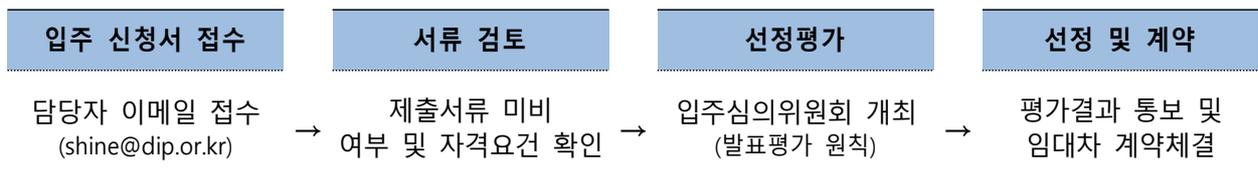
□ 신청서 및 제출 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 유의사항	필수여부
1	입주신청서(양식1)	작성본, 인감 날인 스캔본(pdf)	필수
2	사업계획서(양식2)	2가지 파일형식 모두 제출	
3	입주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(양식3)	날인 스캔본	
4	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양식4)	참여 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	
5-1	사업자등록증 사본	-	
5-2	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	-	
5-3	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	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
5-4	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
6	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	3개년(2023년~2025년) 재무현황 *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창업일~현재까지의 재무현황 자료 제출 * 내용 없을시 "없음"으로 표기하여 제출	해당 시
7	중소기업확인서	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
8	발표자료(발표시간 10분 내외)	pdf 변환하여 제출	
별첨	지적재산권 및 기타 실적 증빙	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콘텐츠사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* 가점 해당기업은 증빙자료(협약서, 참석확인서 등)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	
	- 특허출원/등록, 상표권, 수상 등 공공기관/대기업 수주,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, 투자유치 내역		
	기타 회사소개자료(IR 자료 등)		

- ※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'**번호 서류명 기업명**'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, 압축파일명은 '**기업명.zip**'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·삭제·대체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※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,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(서류 유효기간 만료, 인감 및 서명 누락)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,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,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※ 최종 선정기업은 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국세 납세내역증명서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일 기준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기업을 선정합니다.
 - 국세 납세내역증명(조회기간: 직전년도 ~ 제출일 현재까지)
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조회기간: 당해 및 전년도 전체, 미과세분 포함)

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선정절차



- 입주심의평가: **2026년 4월 1주차 진행 예정**, 발표시간 개별 통보

- 평가결과 안내: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 개별 통보
- 임대차계약 체결: 결과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
- 입주: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(사업자주소 이전 및 서류제출 필수)
- 입주실 배정: 입주 희망호실 우선 배정하되, 호실 중복 신청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실 배정

□ 평가방법

- 발표평가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(각 10분 내외)
 - 접수현황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
 - 발표는 신분증 지참하여 기업 대표자가 진행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평가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메일로 위임장 제출(별첨 양식 참조)
 - 위임자는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임직원만 가능
- 평가위원: 지역 내외 산·학·연·관 전문가로 5인 내외 구성(외부 4인)
- 평가기준: 선정평가표에 의한 각 심사위원 산술평균(최고, 최저점 제외)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※ 후보기업의 경우 차기 입주신청기간 전까지 공실 발생 시 입주 가능(별도 연락 예정)

□ 선정평가표

- 신규 신청기업

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사업계획 (40점)	사업적합성	· 기업의 사업계획이 센터가 지향하는 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가? · 매출구조 및 사업계획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?	10
	실현가능성	·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,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· 연차별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?	15
	차별성 및 경쟁력	· 보유 콘텐츠에 대한 차별성 및 시장성,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 · 목표 시장 및 고객 분석 등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?	15
기업역량 (30점)	전문성	· 콘텐츠 제작, 사업화 등을 위한 전문성(제작능력, 경험, 기술, 아이디어, 마케팅, 네트워크 등)을 확보하고 있는가?	15
	참여인력	· 대표자의 경영능력, 수행경험, 사업의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 ·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?	15
기대효과 (30점)	성장가능성	· 주력 콘텐츠의 사업화 및 수익성,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? · 투자, 고용창출, 해외진출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?	15
	입주연계성	· 센터(프로그램, 입주기업 등)와 협력을 위한 참여 의지와 계획이 있는가? · 센터 입주공간 등 필요성 및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?	15
가점		·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수혜기업	3
합계			100 (103)

□ 입주기간

- 최초 계약기간 2년, 이후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(총 4년)
- 205~211호는 최초 1년 계약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(총 2년)
- 연장평가 시 입주활용률(출근율) 반영 예정(연장시점 도래 시 상세 안내 예정)

□ 입주조건

- 입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본사 소재지를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 등록 후,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필수 제출
- 신청서에 기재한 입주 예정인원의 상주 근무 필수
- 출석률 확인을 위한 기업 임직원 지문등록 및 출근 시 지문인식 협조
 - ※ 입주기업 임직원 1명 이상 출근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, 지문인식기 미태그 시 출석 불인정
 - ※ 장기 출장, 외부 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하여 출석 인정
- 입주 계약 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에 협조해야 함

필독 기타사항

1. 신청접수 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
2.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,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3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4.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, 양수, 재임대,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,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
5.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,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
6. 건물외벽에 입주기업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 불가함
7. 입주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8.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담당자와 협의 및 허가 후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인테리어, 집기류,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
9.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
10. 공부 정리중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 발생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

조정할 수 있음

11.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
12.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
13. 입주기업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입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실태조사에 반영될 수 있음
14.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(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)
15. 선정 이후 협약서 ‘성과관리’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 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.
16.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,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,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,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
17. 사진, 영상,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18.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3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제출의 의무가 있음
19.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개정(‘24.10.)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~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
<p>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</p> <p>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</p> <p>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</p>
--

20.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